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가능

202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김태규 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6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규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2026년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하여,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재차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서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18민주화운동법 제8조제1항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두환을 수괴로 한 신군부세력이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자행한 반란행위와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을 학살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5.18민주화동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법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두환과 신군부의 내란행위, 그리고 그에 맞서는 시민들의 항쟁이 5.18이 발생한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은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형사사법절차를 거친 법적인 판단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는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로서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이라며, “5.18민주화운동법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와 시민학살이 내란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에 항거한 시민들의 희생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김태규 의원의 발언처럼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면 광주시민들의 항거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하고, 덧붙여 "김태규 의원은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